제287회●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 6 17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# 【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650

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이정인 의원외 19명 발의

나. 제 안 일 : 2019. 5. 21.

다. 회 부 일 : 2019. 5. 24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 가. 제안이유

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"정신장애"를 들고 있는바, 단순히 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 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"장기간의 심신쇠약"으로 개정하고자 함

# 나. 주요내용

○ '정신장애'를 '장기간의 심신쇠약'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5조제1호)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#### 1 개정안의 취지

○ 본 개정안은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인 "정 신장애"라는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존 재함으로 "장기간 심신쇠약"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임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변경(안 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의 해촉)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위원	제5조(위원의 해촉)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.	
1.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	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

 본 개정안에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'정신장애' 규정은 2017년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(안)에 따라 당초에는 위원 해촉 조항에 당시에는 '심신장애'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 었으나 '심신장애'라고 규정할 경우 신체장애도 제외 대상이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'정신장애'만 제외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음.

○ 그로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제5조 위원의 해촉 사유로 "정신장애"로 규정하고 있으나, 정신장애의 정도를 언급함 없이 단순히 '정신장애'만을 근거로 위원의 해촉 사유로 드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'장기간의 심신쇠약'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3 종합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호의 위원의 해촉 사유인 "정신장애"는 단순히 '정신장애'만을 근거로 위원의 해촉 사유 근거로 규정으로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수 있고, "정신장애"의 정도를 언급함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으므로 '장기간의 심신쇠약'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참 고 1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현황

#### □ 위원회 개요

- 설치근거 : 「사회보장급여법」제40조,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- ※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」제정 및 위원회 구성: 1993. 5.11
- 기능 및 역할
  -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·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·조정
  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·자문
  -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보장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·자문
  -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
- 소요예산 : 18.000천원 (시비 100%)

####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현황

◆ 위원수 : 총28명 【위촉직 26, 당연직 2】

**※ 여성비율** : **46%**(남 15, 여 13) / **당연직** : 복지본부장, 여성정책가족실장

◆ 임 기: '18.10.26~ '20.10.25(위촉일로부터 2년간)

# □ 추진실적

-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: 1회('19. 2.20)
  - '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4기 사회보장기본계획 심의
-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개최 : 1회('19. 3.15)
  -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